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대한가맹거래사협회

프로그램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이학영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인사말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회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정종열 가맹거래사 /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방안 이동우 변호사 /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청중 토론	
종합 토론	
폐회	

목차

인사말

“경제민주화 실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 우원식	04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학영	07
자살 생각하는 가맹점주, 시급한 ‘다시 경제민주화’ / 김남근	09
“정부는 가맹점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인태연	12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14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29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51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이동주	61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63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70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90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96

“경제민주화 실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원식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서울 노원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보완하여 가맹본부 갑(甲)의 부당·불공정거래로부터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 을(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한 경제민주화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이웃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이 지나는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에 그치는 수가 무려 400만 명에 이릅니다. 반면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의 배경에는 재벌·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 일변도와 과도한 위약금, 인테리어 및 리뉴얼 강요, 물량 밀어내기 등 갑(甲)의 부당한 횡포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각종 부당·불공정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지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듯, 가맹·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회 결성 및 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맹본부인 재벌·대기업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24시간 영업의무 강제, 월 수익 500만원 보장 등의 과장정보 제공,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책정, 가맹점 난립 허가를 통한 영업지역 과밀화 등 각종 부당·불공정거래로 고발당했던 ‘갑질’ 편의점 가맹본부인 CU, 세븐일레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극히 형식적인 심의절차, 녹장조사 등을 문제 삼자 공정위는 “관련 증거자료가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했다”, “현장조사와 출석조사를 충분히 했고, 법리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녹장행정입니다. 네 명의 편의점주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재벌·대기업에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 ② 나홀로 행정입니다. 현장에 가보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 ③ 자의적인 행정입니다. 피해자가 어렵사리 모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 ④ 불공정한 행정입니다. 대기업 봐주기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솔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 ⑤ 불투명한 행정입니다. 처리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공개를 두고 몇 년이나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이 불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시작이자 경제민주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로의 권한 분산, 피해구제 절차 공개 등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개선이 공정위 혁신의 기본 방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가맹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하여 재벌·대기업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경제검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의 600만 중·소 자영업자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미래 세대인 청년가계의 기둥이자 우리 경제의 큰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위기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길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학영 /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경기 군포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두 법률은 공정위 업무 범위에 있어 핵심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 법률이 갖고 있는 미비점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장의 병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영업지역 최소 설정범위 기준이나, 영업지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비나 판촉비, 모집광고비용까지 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에도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잘못된 상권분석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해도 해지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입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건처리 기간제한이 없어 신고접수 후 조사기간 중 신고인이 파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과징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그 결정과정을 알 수 없어 후속대응이 어렵습니

다. 설사 공정위가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인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갑의 횡포’는 결코 어느 순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같은 법제도의 미비점들이 지난 수년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재벌, 기업친화적인 정부와 공정위의 자체개혁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기국회가 후반에 접어든 이 시점,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학영

인사말

자살 생각하는 가맹점주, 시급한 ‘다시 경제민주화’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얼마전 안산의 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했지만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경우 최저임금을 버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1일 매출 송금액도 송금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며 폐업을 고민했지만, 과도한 폐업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하기 어렵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부산, 거제, 용인 등에서 편의점주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편의점 가맹업체의 불공정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2013년 7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점 본사와 상생교섭을 통해 불공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가맹점 본사의 모르쇠와 공정위 팔짱행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가치분도 가능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상생교섭제도에서는 가맹점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상생교섭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공정경쟁 조정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수만 19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는 70만 명이 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에서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된 공정위의 중앙행정으로만 이러한 가맹사업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인테리어 강요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심각성을 사회에 알린 것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 감독행정 개선의 좋은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정경제과를 신설하여 이러한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니 고무적입니다. 우리사회가 만연된 불법 다단계로 문제로 증병을 앓을 때 다단계 등 특수거래 불공정 감독행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비로소 감독행정의 체계를 잡았듯이, 이제 가맹사업거래 감독행정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체계화 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에서의 정리해고, 희망퇴직이 일상화 되면서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밀려 나오는 장년 근로자들이 많아져 전체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동네슈퍼, 음식점, 문구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하면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다수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결국 가맹점, 대리점 형태의 대기업 본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와 같은 본사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갈수록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행위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 제도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감독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다 만 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2013년 8.28 청와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국정운영기조가 바뀌면 경제민주화는 하다 만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는 가맹점주가 나오지 않도록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주, 대리점주,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중소기업인 등 “을(乙)”들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는데, 재벌경제 활성화만으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제활성화도 없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정부는 가맹점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태연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인태연입니다.

우선 요즘처럼 역사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어지러운 시국에 항상 중요한 민생문제에 관심 갖고 앞장서서 노력하는 을지로위원회와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느장행정, 팔짱행정, 나홀로행정, 비밀행정 등 이른바 제때에 조사하고 구제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 도대체 불공정신고사항이 무슨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지 알지도 못 할뿐더러 공정위 결정사항에 대해 신고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방법도 없는, 최소한의 법원의 항고심 같은 절차도 없는 현재 공정위의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회, 촉박한 시기에 소중한 토론회가 열려서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각박해진 자영업 시장문제가 중요한 민생의제로 주목받기 때문이 이렇게 토론회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는 듯 안하는 듯 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할 것이라면 확실히 하는 제대로 된 가맹사업법 개정을 만들고 현장의 풀뿌리 같은 가맹점주들의 권리와 단체를 보호해주는 보다 확실한 2보호 입법과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얼마 전 대기업 편의점에 대한 불공정신고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을 권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 가맹점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가맹본사의 탐욕적인 이윤추구로부터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혜적 성격의 무책임한 상생정책보다는 가맹점주들의 자주적 단결과 동등한 협상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 되는 많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경청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현장의 가맹점주들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 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정상택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1.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점주 등 피해자의 신고 또는 행정·수사기관의 직권조사에 의해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가맹본사의 경제적 보복 또는 관계의 파탄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더욱이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수단인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되기 어려움.
- 또한 중앙정부 위주의 직권규제를 통한 시장감시는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있어,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 하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제1부시장방침 제156호)'에 근거하여 '13. 5. 10.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소하였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아울러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13. 5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13. 8.부터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공정위 및 수사기관에 조사의뢰, 고발조치를 하고 있음.¹⁾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13. 5. 개소)

- ◆ 상담 실적 : 총 416건('13년 137건, '14년 175건, '15년 9월까지 104건)
- ◆ 실태조사 실시 : 총 5회(프랜차이즈 3회, 대리점 2회)
 - ▷ 화장품, 편의점 업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실태조사('13. 8.~9.)
 - ▷ '유제품 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14. 7.~9.)
 -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15. 3.~4.)
 - ▷ 대리점 업계(9개 업종)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15. 7.~8.)
- ◆ 조치내용
 - ▷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사 공정위 조사의뢰 : 4건('14년 1건, '15년 3건)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가맹본사) 수사기관 고발 : 3건('15년, 5개 업체)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 조정신청 지원(6. 8.) : 피신청인 자진시정

-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15. 3. ~ 4.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① 가맹점의 과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② 정보공개서 형식적 심사제도 ③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위임 ④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⑤ 조사권, 고발권 등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15. 9. 11.주 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1) 경기도는 '15. 8. 공정거래과를 신설하고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

- 이후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음.

2.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배경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상담사례 중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 분쟁사례로 나타남에 따라(상담사례의 40.7%) 서울시는 인테리어 공사현황 및 피해유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2)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15. 3. ~ 4.(2개월)
- ◇ 조사대상 : 1,933개(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내 가맹점)
- ◇ 조사내용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현황 및 법 위반 여부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 현황(공사비용, 공사계약 유형 등)
 - 인테리어 공사 거래강제 여부
 - 인테리어 리뉴얼 강제 및 가맹본사의 공사비용 지원 여부
 - 인테리어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의무 이행 여부
- ◇ 응 답 률 : 50.5%(1,933개 가맹점 중 976개 가맹점이 응답)
- ◇ 조사방식 : 방문 설문 조사(시민 모니터링 요원 30명)

3) 조사결과

가. 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 방법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본사가 가맹점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경우가 전체의 62.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62.2%	17.7%	7.7%	12.4%

- A유형 : 가맹본사와 공사계약 체결 후 가맹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시공
- B유형 :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시공
- C유형 : 가맹본사가 추천한 복수의 업체 중 점주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 및 시공
- D유형 : 가맹본사와 상관없이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와 계약체결 및 시공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가맹본사 92개중 실내건축업을 등록한 업체는 한곳에 불과했고 심지어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마저 미등록인 경우도 있었음.

나.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맹본사 또는 본사 지정 시공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경우 평균 공사비용이 3.3㎡당 309만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3.3㎡당 약 174만원으로 약 43.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됨.

< 유형별 인테리어 공사비 >

	1㎡당 공사비	3.3㎡당 공사비
전체 평균	886,277원	2,929,841원
A유형	934,329원	3,088,690원
B유형	938,828원	3,103,563원
C유형	880,647원	2,911,229원
D유형	526,036원	1,738,960원

다. 가맹점주 직접 발주 시 예상 공사비용

가맹점주가 직접 발주할 경우 예상 공사비용을 묻는 설문에서는 조사대상

가맹점주의 90.6%가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예상 공사비용 >

30%이상 절감	60%이상 절감	대체로 비슷	30%이상 증가
65.5%	25.1%	8.5%	0.9%

라.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비율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피해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36.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유형에 따라 B유형>A유형>C유형>D유형 순이었으며,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하였음.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피해 여부>

공사계약 체결유형	하자 발생 또는 공사 지연 경험여부	
	있다	없다
평 균	36.4%	63.6%
A 유형	36.9%	63.1%
B 유형	41.0%	59.0%
C 유형	30.7%	69.3%
D 유형	4.8%	95.2%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맹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는 경우 가맹본사와 시공업체간 공사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책임을 서로 떠넘겨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만,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관련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으로 손해 발생시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고,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거나(52.0%)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25.4%)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리뉴얼 공사강요

〈리뉴얼 강요〉에 대한 설문에서는 16.7%의 응답자가 가맹본사로부터 매장 리뉴얼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70.8%의 응답자가 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실태조사 주요사례

◆ 실내건축업면허가 없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 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이익률 60%).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았으나,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원만 지급, 4,500만원을 수취했다.(이익률 47%)

◆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사비용으로 2억 1,795만원을 지불했으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거와 가벽공사만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가맹점주는 추가 공사비 7,000만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업체를 공사에 투입했으나 도면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도 지연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오픈했다.

◆ □□가맹본사²⁾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매출 30억 8,300만원 중에 가맹점 공사매출(인테리어 시설공사 매출)은 19억 1,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62%이고, 도급공사 매출원가(인테리어 시설원가)는 10억 6,100만원이어서 공사마진율은 45%³⁾였음. 그리고 2013년의 경우에도 전체매출 34억 8,700만원 중에 가맹점 공사매출(인테리어 시설공사매출)은 16억 7,3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였고, 도급공사 매출원가(인테리어 시설원가)는 7억 300만원으로(공사마진율은 58%) 폭리 수준의 이윤을 취하고 있었다.

3. 제도개선 건의사항

1)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 발주 시 경쟁입찰방식 도입

2) □□가맹본사는 실내건축업 등록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

3) 공사마진율 = { (가맹점 수령 공사비용 - 공사 원가) / 가맹점 수령 공사비용 } × 100 = (1,910,234,690 - 1,061,218,509) / 1,910,234,690 × 100 = 45%

가.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가맹본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개입하는 것보다 가맹점주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공사 만족도 역시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이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택권 여부가 가맹본사의 공사품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으나,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사가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하더라도 시공업체를 추천하고 추천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개선방안

가맹사업의 본질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맹점주에게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가 건축마진을 통한 출점수익을 추구할 경우 공격적인 출점정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과도한 출점정책은 결국 영업지역 침해, 상권포화로 인한 가맹점 매출하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가맹본사가 직접 가맹점에 대한 최초 인테리어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4)

<신설안>

제12조의5(가맹점사업자 점포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가맹사업자의 점포설비 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시행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강화

가. 현황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창업지원능력 및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초기단계의 가맹 본부가 무분별하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시 그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사지 프랜차이즈업’과 같이 사업내용이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 제82조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등록제도는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는 가맹본부에게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실업해소 등에 커다란 긍정적 기능을 하는 가맹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함

따라서 등록 제도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 산업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크고 오히려 타 사업장에 고용된 것보다도 생활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등록제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무분별한 자영업에의 진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선방안

따라서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가맹사업이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불공정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거부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전에 통제하는 한편, 등록 후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등록된 계약서·정보공개서와 달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 특약 설정 또는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개정안>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이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 후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4. (... 이하 생략)

3)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가. 현황

‘가맹사업법’ 제39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정보

공개서 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변경등록은 1년에 한 번씩 정기변경을 통해 3,000여개의 가맹본부가 일제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경등록에 대한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취소,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광역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 생략)

4)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 현황

현행 ‘가맹사업법’ 제16조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국한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3년에 554건, ’14년에 572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모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점과,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에 있는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 문제점이 있음.

나. 개선방안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그러나 분쟁조정이 성립한 이후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조정에 대해 불복하는 등 조정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사사안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내용이 다를 경우 분쟁조정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① 현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업무 폭증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여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양 당사자가 양보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시스템인 점, ②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한다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와 분쟁조정권을 부여하여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 역시 현행 ‘가맹사업법’ 제17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권한의 분산 및 경쟁적 협력시스템이 오히려 가맹사업 피해구제에 더 효과적인 점 등의 이유로 불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피
해구제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분쟁발생시, 당사자(가맹점사업자, 가맹본사)가 각각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 분
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가맹지역본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분쟁조정협회의 위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개정안>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회의 구성) ① 협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
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광
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조정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분쟁조**

정을 신청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고발 요청권 부여

가. 현황

프랜차이즈 시장은 2010년 가맹본사 2,042개, 가맹점 148,719개에서 2014년 가맹본사 3,482개, 가맹점수 194,199개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맹본부수	2,042	2,405	2,678	2,973	3,482
브랜드수	2,550	2,947	3,311	3,691	4,288
가맹점수	148,719	170,926	176,788	190,730	194,199
직영점수	9,477	10,155	11,326	12,619	12,86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

현행 ‘가맹사업법’ 제32조의2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조사당사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부족과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중앙정부가 전국의 20만개에 달하는 가맹점과 3,500여개의 모든 가맹본사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분야에서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

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 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판매 감독 연계시스템이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 모델이 될 수 있음.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자치단체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에 따른 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4. 맺으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및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불공정거래관행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관계파탄 또는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 행정·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는 요원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식 체계처럼 권한의 분산과 경쟁적인 행정체제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체계를 다변화하고 실효적인 법집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또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가맹점주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기관에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정종열 가맹거래사 / 길 가맹거래사무소

1. 개정요구 배경

1997년 IMF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¹⁾.

이와 더불어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²⁾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① 처음에는 개인적 · 소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하였으나, 불공정행위는 계속 증가하였고 급기

1)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맹본부 수	2,042	2,405	2,678	2,973	3,482
브랜드(영업표지 수)	2,550	2,947	3,311	3,691	4,288
가맹점 수	148,719	170,926	176,788	190,730	194,199
직영점 수	9,477	10,155	11,326	12,619	12,869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도별 분쟁조정 접수현황

단위 : 개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사건수	243	218	285	212	172	291	357	447	733	578	554	572	4,694

야 2013년 편의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한계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한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 13일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을 결성하여 집단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전체 가맹사업 영업표지 수는 4,477개이고 이 중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표지는 현재 332개인데 이 중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영업표지 수는 약 22개 로 약 6.6%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는 구체적으로 기아오토큐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던킨도너츠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블루핸즈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천지인홍삼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투더디퍼런트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허그맘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GS25경영주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합단체도 결성되고 있는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가맹분과단체,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 세븐일레븐, 더풋샵, 멕시카나, 허그맘, 기아오토큐, 투더디퍼런트, 미스터피자, 본죽, 피자헛,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맞서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구에 가맹본부는 모두 협의를 거부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거리로 나아가 집회·시위를 하거나 국회 등 정치권에 구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외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이는 현재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가맹사업법상 집단적 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 실효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집단적 대응과 그 결과 분석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이 도입된 이후 집단적으로 대응한 11개의 사례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했을 때 진행되는 경과와 이를 통해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및 결과

구분		협의요청에 대한 가맹본부 측 대응		점주 측 대응			
		수락 여부	이후 대응	조정신청/ 공정위신고	집회 시위	정치권 개입	결과
1	A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³⁾ , 손해배상 청구소송 ⁴⁾	0	0	0	합의 성립
2	B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0		0	합의 성립
3	C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소 ⁵⁾	0	0	0	합의 성립
4	D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 ⁶⁾ , 형사고소	0		0	정보공개서등록 취소(신규출점불가)
5	E가맹본부	거부		0			미해결
6	F가맹본부	거부		0			미해결
7	G가맹본부		계약해지,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	0		0	미해결
8	H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	0	0	0	합의 성립
9	I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상호사용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	0	0	0	합의 성립
10	J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위협	0		0	합의 성립
11	K가맹본부	거부	계약해지	0			미해결
합계				11	4	8	

* 시행여부를 0, X 등으로 표시

이를 보면,

① 가맹본부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형사고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부 주도적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

4)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5)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 시 가맹본부의 전형적인 대응의 하나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임

6)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②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집회·시위를 하면서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2> 가맹사업거래 집단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쟁점

단위 : 개

구분		2013	2014	2015	계
피해구제	위약금 감면	1	1	0	2
	손해배상	1	3	3	7
제도개선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11
	광고 판촉비	0	2	3	5
	점포환경개선	0	0	3	3
	과도한 물품공급비용	0	2	2	4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5
	10년차 이후 계약해지	0	0	3	3
	영업지역	0	1	2	3

① 2013년에는 편의점 가맹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하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가맹본부의 위약금을 감면하고 폐점하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② 2014년 이후 가맹본부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과도하여 가맹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협력업체 계약 시 리베이트 등 부조리, 영업지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③ 2015년에는 광고비·판촉비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최초계약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가맹계약해지 문제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은 사실 가맹본부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합의사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3> 합의 성립된 주요 쟁점7)

구분	쟁점 수	비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3	
광고비·판촉비 일방적 전가	3	
과도한 물품공급비용	2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2	
매장타입(홀매장,배달매장) 변경	1	
10년차 이후 가맹계약 지속	3	
영업양도 시 승인거부 등 불공정 문제	2	
점포환경개선	2	
물품보증금 반환	1	

구체적으로,

- 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가맹사업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 ②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가맹본부도 이를 수용하여 10년 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 광고비와 판촉비에 결정·부과와 투명한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④ 물품공급과 협력사 선정 등에 있어서 가맹점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는 개정 가맹사업법상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거리로 나가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비제도적이고 사회적 고비용을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7) 합의가 성립된 것 중 일부는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기로 설정돼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3개 합의문을 대상으로 함.

3. 제도개선 건의사항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구체화 및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1)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 및 취지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동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모법의 목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가맹사업법 제1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제점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거래조건 협의 세부규정 부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주무관청에의 구성신고·다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확인·협의 결렬시의 후속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세법상의 고유번호증을 발부받거나⁸⁾ 지방정부에 등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정부는 점주단체는 전국단위의 조직이라 지방정부가 등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의 권한 위임도 없어 지방정부가 전국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받기에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⁹⁾.

그리고 개정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 본문에서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수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다수를 분명히 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교섭이나 합의서 조인 시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 거부 또는 협의결렬 시 합리적 분쟁해결책 미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도 거의 모든 가맹본사가 이를 거절하여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8) 본죽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등

9) 본죽가맹점협의회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의 서울시 소상공인과의 점주단체 등록신청 및 이에 대한 답변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맹사업의 거래조건 협의 문제가 집단적 시위·국민여론에 호소·정치권에 도움요청 등 사회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 분쟁의 자주적 해결이 요원하고 분쟁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니스톱가맹점사업자협회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3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고 본사 앞에서 80 여 일 동안이나 시위를 한 후 국회 정당위원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모임,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도 미니스톱과 유사한 다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화요구 → 가맹본사의 대화거부 → 기자회견 → <u>무기한 집회·시위</u> → 정치권 중재 → (상생협약 타결)

결국, 거래조건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기한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제재를 가하고, 가맹본부가 거부하거나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3) 개정방향

가. 이 규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을 경우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	개정의견
<p>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p> <p>① (생략)</p> <p>②<신 설></p> <p>③<신 설></p> <p>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p>	<p>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신고)</p> <p>① (생략)</p> <p>②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단체 구성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구성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 주소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동종업종의 단위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업종별 연합단체를 말한다.</p> <p>제14조의6(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변경 협의 등)</p> <p>①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p>

<p>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의3(규약)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규약에 다습니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회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

	<p>제14조의4(신고증의 교부)</p> <p>①공정거래위원장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보완요구 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제14조의5(변경사항의 신고등)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p>제14조의7(상생협약의 작성)</p> <p>①상생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상생협약의 당사자는 상생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	--

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거부를 불공정행위로 유형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고 분쟁이 극단화 되는 경향을 막기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의율하여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	개정 의견
규정 없습니다	제12조의7(거래조건의 부당한 협의거부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소수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 결렬 시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가맹계약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이에 따른 압박을 통해 실효적인 협의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규정 없음>	<p>제14조의8(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p> <p>①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다습니다 각 호의 경우 가맹사업거래를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맹본부의 협의거부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결렬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이 결렬된 경우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 4호 외에 이에 규정이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의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는 행사기간 30일 이내, 행사횟수 연 3회 범위 내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상품 및 용역의 공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p>

2)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미리 분담근거·분담비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사후 열람을 보장하는 규정 신설

(1)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 일부 원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p>[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p> <p>2. 거래상 지위의 남용</p> <p>나. 부당한 강요</p> <p>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2) 문제점

가맹본부가 광고비·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 가맹점 모집광고의 성격이 짙은 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2014년 D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분담·청구하여 소송으로까지 비화한 후 현재까지 분쟁을 계속하고 있고, 2015년 E 가맹본부가 광고비 100%를 가맹점사업자에 전가하는 행태로 분쟁이 발생하여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생협약이 타결된 미스터피자¹⁰⁾의 경우도 광고비가 문제되었는데,

10) 미스터피자 상생협약(2015년 8월 30일 체결)

제2조(광고비)

- ① 본사는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광고비 상세집행내역을 모든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 열람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단, 이 자료는 이 협약이 지향하는 미래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② 현상황에 대해서 본사의 대표이사가 서신을 통해 유감표명을 한다.
- ③ 광고비의 부과 및 집행에 대해서 본사와 미가협이 합의과정을 거쳐 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며, 본사는 집행 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모든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 열람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 ④ 향후 진행할 광고의 범위는 대중매체 광고, Day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본사와 미가협이 합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광고비와 판촉비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사후 열람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상생협약에 규정하였습니다.

③ 개정방향

권한과 책임의 상호 대등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발생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갖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의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판촉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하고 이를 집행한 이후 가맹본사가 비용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하여 정한다.

- ⑤ 본사는 광고비와 로열티를 구분하여 징수한다.
- ⑥ 본사는 미스터피자에서 징수한 광고비는 미스터피자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⑦ 본사와 미가협은 광고비를 본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현재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인상분담 한다.

제3조(판촉비)

- ① 판촉비의 부과·분담비율 및 집행에 대해서 본사와 미가협이 사전 합의과정을 통하여 정하고, 시행 전 본사는 해당 가맹점의 동의를 득한 후 시행키로 한다. 본사는 집행 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모든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 열람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 ② 앞으로 진행할 판촉은 할인행사, 증정행사, 팝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등으로 정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본사와 미가협이 합의과정을 통하여 정한다.
- ③ 판촉행사 시 본사는 판촉행사 논의를 위해 미가협에 시행일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1주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①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습니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② 문제점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규정에 대한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I 가맹본부는 10년 차가 다가오는 매장에 대해 카페형 매장전환을 강요하고 전체 전환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다가 집단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영업을 10년 동안 지속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 일종의 생계수단으로서 직업화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조항에 의해 동일업종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업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는 실제 가맹사업 거래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 타결된 미스터피자¹¹⁾, 본죽¹²⁾, 한국피자헛¹³⁾ 상생협약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여 ‘최초 가맹계약 체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인 가맹계약을 한다’고 합의서에 명문화함으로써 10년 차 이후에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③ 개정방향

갱신요구권 10년이라는 규정이 최소 10년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계약기간 10년 된 가맹점들에 대한 계약종료 및 이를 이유로 하는 불공정행위의 빌미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 정상적인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계약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가

11) 미스터피자 상생협약(2015년 8월 30일 체결)

제7조(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보장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는다.

12) 본죽 상생협약서(2015년 10월 8일 체결)

제3조(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보장한다. 단,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협의회간 상생협약(2015년 10월 8일 체결)

제6조(가맹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한다.

맹본부에게도 이로운 점,

ii) 가맹본사는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iii) 이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가맹금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 가맹본부에게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맹계약 위반의 경우 일반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해지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진 가맹계약 10년 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을 삭제하여 일정한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규정	개정의견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p> <p>① (생략)</p> <p>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p> <p>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p> <p>① (생략)</p> <p>② <삭제></p> <p>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4) 가맹점사업자의 법정 해지권 규정

①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법정 해지권 규정이 없습니다.

② 문제점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 의해 작성되어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필요한 경우나 일정사유 발생에 의해 가맹사업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과 상법 등 규정을 원용해야 하나, 가맹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③ 개정방향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영업수익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중증질환 등 건강상 사유, 상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매출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지권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	개정의견
<규정 없음>	<p>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다습니다 각 호의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하여 그 결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영업수익의 차이가 현저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2.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한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영</p>

	<p>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3. 가맹본부가 제12조 내지 제12조의4에 위반하여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현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4.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이 가맹본부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법적이거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p> <p>6.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7. 기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p>
--	--

5) 영업지역 조항

①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 및 입법 취지

<p>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 2014.8.14.] 제12조의4</p>

가맹본부 간 매장 수 확대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조차 중복출점을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당수¹⁴⁾가 인근에 동일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 매출감소¹⁵⁾를 겪고 있으나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본부가 거의 없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문제점

가. 영업지역의 최소 설정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가맹계약 현실에서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¹⁶⁾가 등장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 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영업지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③ 개정방향

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의 최소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던 모범거래기준 중 업종별 영업지역의 범위 등을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의 ‘협의’를 ‘합의’로 변경하여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 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2013년 서울시 편의점 모니터링 결과 - 동일 브랜드 점포와의 거리

50m 미만 : 9.4%, 50m ~ 150m : 27.6 %, 150m ~ 300m : 23.6%

15) 2013년 서울시 편의점 모니터링 결과 - 근접출점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10% 이하 : 48.4%, 10% ~ 30% : 45.1%, 30% ~ 50% : 5.5%, 50% 초과 : 1.1%

16) D가맹본부 진해점, 이수점, 논현한신포차점, 송도국제도시점 등 D가맹계약의 11개 계약서가 10m, 50m 계약서가 1개였으나, 이후 점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500m로 수정.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_____ _____ ----- 합의 _____.</p> <p>③ (현행과 같습니다)</p>

4. 결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은 불공정에 대해 개별적 · 소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추구하다 2013. 8. 13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이 도입되어 집단적 ·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부작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맹점사업자들은 불공정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한없는 집회 · 시위를 하고 정치권에 하소연하여 어렵게 피해를 구제받고 불공정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의 중요한 한 축인 바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가맹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권 등 제도적인 해결대안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인한 소모적이고 고비용·저효율적인 구조를 생산적이고 저비용 · 고효율 구조로 바꿔 불공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방안

이동우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1.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의 분배 과정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

[참고]

- 2040세대에 물었더니.. "부의 분배 불공정" 91%, "빈부격차 심각" 93% 응답*.
- 2012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개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 기준에서는 3위, 상위 10%에서는 2위에 해당**

* 경향신문 2014. 7. 8. (국가미래연구원 '2040 사회인식조사 보고서' 참조)

**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 참조

- 이렇듯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설립 목표에 따라 우리 사회 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및 불공정행위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

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한 행정은 우리사회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정책수요자들인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공정위 사건처리절차행정 개선의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을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피는 것이 필요함.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방안은 항을 바꾸어 살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행정의 문제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느장 행정 - 사건처리 절차 지연② (피해구제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시정명령의 비실효성, 피해배상 제도 미흡, 소송 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 부재③ 불투명 행정 - 사건 기록 및 상대방제출 자료의 공개거부④ 독점 행정 - 지자체의 조사권한 불인정,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존속⑤ 자의적 행정- 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 및 불복을 위한 실질적 수단의 부재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이학영의원실 등이 지난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지적한 공정거래위원회 5대 개혁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만큼 당시 지적된 유형별로 분류함.

- 이하에서는 해당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방안을 검토 함.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1) 느장행정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기간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평균 177일이 소요되었고, 주요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장지배적남용행위 255일, 부당한 공동행위 156일, 불공정거래행위 213일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위원회 상정 건 중 ‘신고’의 신고일부부터 처분일까지 평균 327일이 소요됨**.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

** 김종훈의원실,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기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를 해도 도중에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느장행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근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조사계획서 제출 및 조사기간의 설정,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패스트트랙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느장행정 - 사건처리절차지연	1. 조사기간제한, 조사계획서 작성의무화(안 제 50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2.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4 제3항, 제4항)
	3. 조사기간 위반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청구 도입(안 제50조의4 제7항, 제8항)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사시한에 쫓긴 부실한 사건처리, 심도 깊은 조사의 곤란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나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규정한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4개월까지, 그리고 담합과 같이 특수한 사안의 경우 1년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 주장은 근거가 미약함.
- 더욱이 개정안의 기한은 조사기간에 한정되는데, 조사관의 조사 후 심결에 회부되어 최종처분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73일이 소요됨*. 결국 개정안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의 최종처분일까지 소요기간은 133일(2개월+73일)~193일(4개월+73일)로 현재 평균 처리기한인 177일과 큰 차이가 없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

(2) (피해구제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 현재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중 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 반복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 국민이나 기업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징금 역시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업체 및 국민의 구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은 2010년, 2011년 각각 21%, 9.6%로 같은 기간 타 행정소송의 7.1%, 6.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2012년 서울지방법원법률사회, '공정거래 실무' 참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수행기관 선정 및 절차 진행에서 신고인의 입장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최근 법원의 남양유업 과징금 취소판결 사건 역시 피해대리점 측이 가지고 있는 중요자료가 해당 소송에서 활용되지 못한 점이 결론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수행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력은 소송의 승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이언주 의원) 및 피해자구제기금 설립(김기식 의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은 그 행위의 본질적 목적과 대상을 잃은 것 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나홀로 행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 소송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법률대리인에 대한 소송수행 권고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피해구제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 시정명령의 비실효성, 피해배상제도 미흡, 소송수행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부재	1. 중재를 통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도입 (안 제57조의2)
	2.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3)
	3. 법 위반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신고인의 대리인에 대한 소송수행 우선권고 제도의 도입(안 제55조의2)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 없이 사인의 개별적 권리구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소송법 체계와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적자치의 수정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를 민사법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해 감독하는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공정거래사안은 단순한 사적자치의 영역이 아닌 만큼 해당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3) 불투명 행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면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됨.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서는 관련 민사재판 및 타 행정처분을 위한 주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심지어 법원의 기록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또한 사건조사 절차에서 신고인들이 절차진행 상황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의견 등의 공개를 요구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심사보고서는 사건을 오랜 시간 조사한 심사관의 최종의견인 만큼 해당 내용의 파악 및 그러한 보고서와 최종 심의결론의 상이함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는 문서임. 또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의 제출 자료 등이 각 당사자에게 공개되어 일방의 주장만이 조사에 반영되어서는 안 됨.
- 이러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등의 공개 및 당사자들의 열람권 보장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불투명행정 - 사건 기록 등의 공개거부	1.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의무 (안 제56조의2)
	2. 신고인에 대한 의결결과 송달 (안 제43조 제4항)
	3. 신고인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송달 (안 제50조의4 제6항)

- 해당 개정내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법 제62조와의 충돌을 근거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 제62조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와 법 목적 이외의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 법 제62조와의 충돌을 우려하는 주장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4) 독점행정

-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주요 소관법률 11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한은 다음과 같음.

[유형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조사권한 있음.

[유형②]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가능하나 대통령령이 없음.

[유형③]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 조사권한 없음.

- 사회가 다양화되고, 거래관계 역시 복잡해짐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발생빈도도 점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면 감사원정,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대응에는 미흡함.

- 현재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일부 법률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조사권한을 갖고 있으나 법집행 과정에서의 불통일성과 같은 문제는 없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속적 고발요청권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면 되고, 다른 법의 경우 이미 민병두 의원등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개정안은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5) 자의적 행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의 조사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회부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심사관의 권한은 매우 강력함. 또한 심사관의 시정권고를 위반행위자가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정명령으로 의제(절차규칙 51조 참조)되는 등 심사관의 조사 및 최종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계에서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특히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의 경우 전원회의 등의 심의과정에서 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신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기업들은 오직 심사관의 자의적인 조사행위 및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권리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시간 조사를 하고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해당사안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심의절차종료’를 사건처리 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관 등의 자의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부작용의 폐해가 매우 심각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행정소송 제기권한 인정, 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심의절차종료’의 삭제, 민사소송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의 원칙적 금지 등의 개선방안 도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자의적행정 - 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 부재	1. 심사불개시결정,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안 제54조 제3항)
	2. 사실관계확인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종료 금지(안 제50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
	3. 민사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의 원칙적 금지(안 제50조의5 제4항)

-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소로 인해 공정위와 법원의 업무부담이 현저하게 가중될 수 있어 사건처리의 효율성·신속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조사관이나 전원회의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라·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행정과 국민주권의 기본사항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신속성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인 만큼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4. 결어

- 지난 달 21일 공정위가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발표했으나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해당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는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비판한 바 있음.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감.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공정위는 절대다수의 국민과 중소기업들이 공정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 그에 적합하게 사건처리절차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정위는 공적 법 집행기관이므로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공정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태도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인 만큼 그와 관련한 근본적인 시각변화가 절실함.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이동주 / 전국을살리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10명중 8명이 폐업하는 현실

-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우리나라 치킨점포수(3만 6천여개)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수 (3만1천개) 보다 많다보니 생존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함
- 최초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57.2%로 폐업주기도 짧아짐
- 폐업 자영업자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 1~4인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 즉 생계형 업종 (94%)에 집중화됨 (14년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폐업 실태조사)

2. 대기업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출점 정책

- 흥대상권의 경우 롯데, 이랜드, 신세계, CJ등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업체 164개가 대부분 음식점, 미용업, 신발 및 의류소매업, 편의점등 개인 소상공인들 업종과 중복 (15년 10월 뉴스타파)
- 편의점 2만 5천여 개 롯데, GS, CU등 대기업이 90%이상 시장 독점
- 높은 임대료,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비용, 협소한 상권 규모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문조사 결과 (13년 12월 소상공인 실태조사)
-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불공정 피해 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3.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의 한계

-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제공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앞서 살펴본 허위 정보제공서 같은 더 풋잡 건은 별개로 치더라도, 가맹 본사가 제공한 매출정보가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 미스터 피자, 피자헛, 본죽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본사들의 경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광고비 책정, 인테리어비용의 과다 청구, 영업지역 미보호, 10년차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탄압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음
- 따라서, 앞서 발제문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10년차 가맹계약 갱신을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일방적이고 부당한 광고,홍보비 책정 △인테리어비용의 과다 청구등은 앞서 서울시의 실태조사처럼 공정위가 즉각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후속적으로 개정안 마련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함
- 그리고 대부분의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해서 상생과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 보단 마치 70,80년대의 노사관계처럼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전근대적인 상황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따라서 이에 대한 가맹점주협의회(가맹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맹본사에 대한 좀더 세분화되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

4. 자영업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

-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천개이상의 대형가맹본사 발굴을 목표로 프랜차이즈 규제법안 완화 및 활성화 정책을 주장하면서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창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음 (09'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방안- 국가경쟁력추진위원회)
- 과밀화된 영세한 자영업시장의 구조조정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중소기업들의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의 목적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대형유통업체 혹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중심으로 시장보호와 공정거래 정착을 통해서 옮겨와야 함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서설

우리나라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가맹본부 3,482개(외식업 72.4%, 서비스업 18.6%), ▲가맹브랜드 4,288개, ▲가맹점 19만4,199개(외식업 45.8%, 서비스업 31.6%)¹⁾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²⁾된 가맹본부는 2,973개, 등록된 영업표지는 3,691개에 달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190,730개에 이른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만5,480개의 가맹점이 늘어나 창업자의 약 10% 정도가 가맹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의 현실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창업단계에서 접하는 시장으로 이때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계약관계와 이들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창업자들이 자영업자로서의 안착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2015. 7. 20.자 시사저널

2)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2013. 등록현황

2. 가맹사업의 분쟁현황

그러나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개설된 이래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총 416건('13년 137건, '14년 175건, '15년 9월까지 104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³⁾만 249건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가맹거래법 이라 함)으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취한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42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9건, 가맹계약서 미교부가 9건, 불공정거래행위가 8건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3. 가맹사업 분쟁 발생,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와 같은 결과는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 가맹계약의 계약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나 홍보성 상담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가맹점주들의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행태를 보면 불공정한 영업지역 설정⁵⁾, 광고·판촉비용의 가맹점주에게로의 전가⁶⁾,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의 강제⁷⁾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2014 통계연보 참조, 가맹계약해지 가맹금반환 109, 일방적 계약변경 철회 6, 계약이행의 청구 4, 부당이득반환 19, 영업지역의 보장 14, 상표 및 의장권 침해 97 등

4) 2014년 공정거래백서 496 참조

5) 2015가맹0236 (주)지엔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6) 2012서제1816 (주)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7) 2014가맹0401 (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8) 2004가맹1822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한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⁹⁾ 업무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조정신청 4061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2135건(조정불성립 815건, 기각 389건)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그 중 소제기나 신고취하, 가맹본부의 폐업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된 것만 722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가맹본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사실상 가맹점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결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사이의 분쟁의 대부분이 계약체결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특히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과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약관 형태로 마련한 것으로서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도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불공정한 내용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가맹거래법 상 규정 현황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등록(제6조의2, 제6조의3)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기준 14~7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가맹계약서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이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의 특성과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비용의 투자, 가맹본부의 정보력에 의존하여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의 개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가맹점주들이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규정된 것이다.

9) 2014년 공정거래백서 참조

그러나 현재 정보등록에 관한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가맹본부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의 원천인 정보공개서 등록은 형식적 서류심사만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부적절한 가맹사업자의 정보공개서가 등록¹⁰⁾되어 가맹점이 개설되고 가맹본부와 이들 가맹점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사전 제시의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허위·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계약 체결, 계약조건의 부당한 설정 등의 문제를 계약 체결 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분쟁 발생한 경우 조정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3년 동법의 개정을 통해 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점포환경개선 요구는 12조의2의 도입을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2015. 3. 서울시의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사와 공사계약 체결 후 가맹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62.2%,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시공하는 경우가 17.7%에 달하여 사실상 점포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제1항 제2호 구속조건부거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을 통해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면서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모범거래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업종별 영업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여 영업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라지게 하여 분쟁의 씨앗을 낳았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현상은 물론 영업지역이 10m, 50m인 부당한 계약서들이 등장¹¹⁾하고 있다.

10) (주)스킨애니버서리спа, 더 풋샵 2015. 9. 1.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11) (주)스킨애니버서리спа, 더 풋샵

한편 동 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보장(제13조 제2항)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소한의 피해(투자자본 회수)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일 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다. 가맹점을 개설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는 그 영업지역에서 중견 자영업자로서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의 브랜드 홍보의 수단으로서 기능, 단골고객 확보, 매출 증대 등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청구권의 법상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 본죽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이 10년째에 도달한 가맹점주들에게 영업형태를 변경하고 이를 위해 점포환경을 개선하라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동법 제13조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2007년 도입된 제13조 제2항이 10년째 되는 2016년에는 더 많은 탈법 사례들이 예상된다.

한편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2013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을 도입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발적 노력들이 성과를 이루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노조법과 같은 단체의 신고·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등록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14조의2는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
가 응하지 아니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여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아니하므로 실효성이 없다.

5. 개선 방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 전 정확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시 의무가 철저히 관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형식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
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업무를 특별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정
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실질적 심사 수준까지 강화하고 꾸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시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포환경개선 관련된 업체의 공정한 선정 과정과 해당 업체
의 인테리어 가격 등이 (예비)가맹점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모범거래기준과 같은 업종별 구
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더불어 설정된 영업지역을 가맹본
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흑자 경영을
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로서도 불이익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당 가맹점주들이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13조 제2항 외에 즉시 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굳이 10년으로 제
한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기간 제한을 둔다면 가맹점주들의 동일 영업지역, 동일업종에 관한 경업금지기간을 완화하여 계약종료로 인해 생계수단 까지 파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성화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점주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거래조건의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등록 업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등의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 등 법상 제재 조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자사업자단체들로 하여금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사실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안진걸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지난 10월 14일 GS25의 한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횡포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지난 11월 2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추모하며, 많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빈곤과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까지 하는 현실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발제자 3인의 발제 내용에 크게 공감하고, 이번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해봅니다.

2. 이번에 서럽게 세상을 떠난(세상을 떠나게 내몰린) GS25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비용과 생활을 책임져 오다, 최근에는 1일 매출을 GS25가맹본부에 송금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에 보통 10%의 이자까지 물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큰 규모의 CU편의점이 주변에 들어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추진했지만, 가맹본부 본사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고뇌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3. 고인이 된 편의점주의 유서에도 GS25의 가맹본부인 GS리테일 측에 대한 울분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편의점은 한달 수익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166만8329원) 수준이었으니 가맹본부의 고수익 보장이라는 약속을 믿고 편의점

일을 시작한 이들은 가맹본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편의점은 모든 매출을 하루 단위로 본사에 송금하고,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모든 물품 값을 제한 후, 한달 총 매출의 35%를 본사가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편의점주가 65%의 매출이익에서 임대료, 인건비, 각종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 편의점주는 손해나 저수익에 시달린다 해도 본부는 편의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이익을 보는 ‘고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면서 또 투쟁도 전개하던 중, 2013년 7월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맹본부의 횡포가 일부 개선되고 편의점주들의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교섭도 진행하는 것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5. 더 구체적으로는,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 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 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고인이 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 문제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6.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편의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고,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이 비호되는 사회의 모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전국에 편의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3만 개를 육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두를 합하면 가맹본부는 3,800여개, 가맹점은 50만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시 근무 노동자는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201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집계) 그런데,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GS그룹의 GS25는 가맹점만 8,200여개에 달하고 매출액은 4조 9,583억원을 기록했고, 편의점 대기업의 총 매출은 무려 1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7.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난 10월 26일에,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웨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롯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무려 3년을 끌다가 면죄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 재벌대기업비호위원회라는 세간의 비판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편의점주들이 작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편의점주 본인도 최저임금 안팎의 수익에 머물고 있고), 슈퍼갑들의 다종다양한 횡포에 매일처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편의점들을 화끈하게 봐주기 해준 것은, 박근혜 정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와 편향으로 경제기조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재벌 천국, 노동-중소상공인 지옥”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슈퍼갑’들의 횡포에 맞서 ‘을’들이 뭉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바로 ‘멀티을’이 되자는 것입니다. 전국의 민초들이, ‘을’들이 한목소리로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체제를 거부하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외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죽지도 말되, 더 이상 죽지도 말자고... 누구나 한 평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도, 스스로 생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9. 그동안 민변·참여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정의당 중소기업위원회 등 뜻있는 야당, 그리고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점주 유치, 과도한 가맹금 수취, 편의점의 경우는 35%나 되는 수수료(로열티) 폭리,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10. 가맹금을 하향 조정하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수수료율은 대폭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 수수료율이 대폭 낮춰진다면 편의점주의 이익도 늘어나고,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갑을’뿐만 아니라 ‘갑을병’ 모두가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상생 정책이 가져

오는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전국의 ‘을’들이 더욱 ‘멀티을’이 되어 연대하고 단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국회는 신속히 전국의 편의점주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되는 직무유기를 개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그런 상황에서 1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갑을개혁, 중소기업 보호 등을 포함한 4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서 10대 최우선 처리 법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아래 내용 참조) 그러나, 입장 및 좋은 정책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를 현실화시켜나가는 힘과 지혜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즉 당 전체가 당력을 모아서 이를 얼마나 제대로 추진하는지, 효과적으로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호응을 키워나갈 것인지가 관건 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사자 단체들과 중소기업인, 경제민주화,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2. 더 구체적인 문제는, 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4대 개혁방안에는(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인테리어 강요 및 폭리 행위도 근절하고, 나아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이 10대 법안 못지않은 무게로 처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4대 개혁 방안의 세부내용도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정기국회 '10대 법안'

법안명(*는 제정법)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전·월세 상한제 도입
사회보장기본법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통제 철폐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원가 공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기업 청년고용의무 신설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법*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리점거래법*	표준계약서 의무화, 밀어내기 금지
법인세법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정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세월호특별법	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
위안부피해자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 참조 : 문재인 대표 발표문 중

‘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우유업체의 소위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공정한 갑을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의 힘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을의 이익을 찾겠습니다. 대기업의 이익 뒤에는 많은 협력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갑질, 육갑을 근절하겠습니다.

-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 6대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13.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중에서, 특별히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봅니다.

○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취지

-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사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경험 또는 노하우가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금을 대가로 판매하는 것임.

- 그러나 가맹본사는 출점이 많을수록 인테리어 공사수입, 로열티 등 출점이익이 발생하고 경쟁업체의 상권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출점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음.

- 정보량과 사업능력이 우월한 가맹본사가 출점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을 통해 출점을 안내하여야 하나, 현실은 본사의 기회주의로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가 일상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권분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2013. 8. 13.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 ④ :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규정이 추가되었고 예상매출액의 범위도 1.7배로 확대되어 실효성이 없는 규제로 전락되었음.

동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 실제 현장에서는 가맹본사가 입점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상매출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근 가맹점 매출정보만 형식적으로 제공하고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구두로만 제공하여 여전히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예상매출액 고지를 통한 기만적 모집행위의 근절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몰각되었고 법 규정은 사문화되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삭제하여야 하고 제3항의 1.7배 규정을 1.4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14. 아래는 공정거래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의 내용은 아래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될 정도로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 사례들만 모았습니다.

[사례 1 : 마메든샘물 피해]

- 시장 뺏으려는 대기업의 ‘부당염매’ 입증에도 공정위는 4년 만에 ‘사업활동방해’ 시정명령

1. 배경 설명

- 2000년 5월 • 김용태 사장, ‘지리산 청학동 샘물’이라는 상표로 샘물 유통사업 시작
- 2004년 • 사업 호조로 ‘마메든샘물’이라는 브랜드 출시, 브랜드 출시 이후 계속 매출 신장세
- 2006년 • 석수&푸리스(현 하이트진료음료) 임직원 3번 찾아와 마메든샘물 포기과 석수&푸리스로의 사업 전환 요구하였으나 거절
 - 석수&푸리스는 마메든샘물 12개 대리점에 접근하여 초기 3개월 동안 샘물 무상 제공, 1년 동안 통(18.9L)당 860원, 이후 4년 동안 1,720원, 판매고에 따른 리베이트 추가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대리점 브랜드 전환 작업 시작(당시 마메든샘물은 대리점에 2,300원, 석수&푸리스는 2,500~2,600원 수준으로 대리점에 공급)
 -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은 석수&푸리스의 접촉 이후 마메든샘물 물량 대신 석수&푸리스 물량을 소화하며 마메든샘물은 대리점에 대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¹²⁾
- 2008년 7월 • 8개 마메든샘물 대리점이 석수&푸리스 대리점으로 전환
 - 매출의 급격한 하락과 미수금 증가로 마메든샘물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감
 - 김용태 사장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배신감과 사업 실패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

2. 공정위 신고와 결과

- 2009년 9월 • 석수&푸리스(현 하이트진료음료)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1차 신고
- 2010년 9월 • 공정위 “피신고인의 공급가격이 제조원가를 하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장내 유사행위 또한 인정되어 피조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염매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

12) 2007년 10월 기준 약 3000만원에 불과했던 미수금이 2008년 6월 기준 약 2억 원으로 증가

- 이에 신고인이 “석수&푸리스가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당염매가 인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 “그렇다”고 답변
- 2010년 12월 • 석수&푸리스가 마메든샘물 대리점에 원가이하로 공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춰 2차 신고
 - 2차 신고 이후 당시 담당부서 팀장은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였으나, 이후 면담 요청부터는 계속 면담 회피, 이후 담당 조사관은 “일시적으로 싸게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객관적 판단보다 (공정위의) 주관적인 판단 사항”, “공정위가 왜 원가계산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태도를 바꿈
- 2011년 10월 • 공정위,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사건 조치의 근거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 2012년 • 공정위에 3차 신고
 - 공정위의 편향된 태도에 여러 차례 경고하고 2012년 7월 공정위 앞에 대형트럭으로 교통방해 시위 벌여 김용태 사장은 49일 구류 생활
- 2013년 7월 • 공정위, 석수&푸리스에 대해 부당염매가 아닌 ‘사업활동방해’로 시정명령 의결

3. 공정위 처분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의 정의 및 유형

- 부당염매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 하나로 금지
-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부당염매를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로 구분,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친 염매행위를 의미하고 그 이상이면 계속적 염매에 해당
- 이 때 염매의 기준은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판단, 즉 상품의 공급가격이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보다 낮으면 염매에 해당

- 염매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추상적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즉 계속적 염매는 공급가가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보다 낮다는 점만 증명되면 위법성을 인정

2) 석수&푸리스의 염매는 계속적 염매의 위법성 요건 충족

- 석수&푸리스의 기존 마메든샘물 대리점에 대한 염매는 계속적 염매에 해당
- 신고인이 제출한 원가이하 판매에 관한 객관적 증빙 서류에 의하면 석수&푸리스가 마메든샘물 대리점에 제공한 샘플의 통당 가격은 최소 2,000원 이상¹³⁾
- 따라서 석수&푸리스가 1년 동안 통당 평균 808원에 샘플을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에 제공한 행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부당염매에 해당

3) 증거 외면하고 4년을 끈 공정위 처분

① 처분 결과의 문제점

- 1차 공정위 신고시 정황만으로도 부당염매가 충분히 의심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사 없이 처리도 문제나, 1차 신고 시에는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공급가격이 원가 이하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 공정위 처분을 단순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고 봐 줄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신고인이 2차 신고를 하면서 제조원가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이후에도 무혐의 심의종결 처분한 것은 전혀 정당하거나 합리적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는 실제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대리점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가격 조건(통당 평균 808원)으로 상당 기간 공급하였다는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부당염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공정위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장은 피신고인에 대해 “검찰 고발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등을 물으며 마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실제 의결서에서는 검찰 고발은커녕 과징금 부과도 이뤄지지 않음

13) 석수&푸리스의 OEM 제조업체 사장과의 면담 녹취록으로 확보한 OEM 공급 단가, 물류비, 샘플병 1회전 단가,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증빙함

② 너무 늦은 처분

- 신고인은 이미 석수&푸리스의 부당염대로 파산 상태로 접어들었고, 공정위의 약 4년 걸린 뒤늦은 시정명령 의결은 신고인이 공정위의 판결을 근거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소진시킴
- 1차, 2차, 3차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조사관만 3번 바뀌어 4번째 조사관에 와서야 공정위 의결 이뤄짐

[사례 2: 미폐(주) 피해]

- 제대로 된 신고인 조사 한 번 없이 상당한 증빙자료 제출에도 무혐의 처분

1. 배경 설명

- 1998년
- 커튼,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 미폐(주), 롯데마트에 특정매입 거래 및 직매입 형태¹⁴⁾로 2011년 6월까지 상품 납품
- 이후 과정
- 매출 성장으로 2003년 약 30억 원이던 매출이 2007년에는 약 45억 원으로 신장
 - 미폐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롯데마트는 오히려 커튼, 롤스크린 등의 필수 부자재인 커튼봉 등을 직매입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매출이 좋은 매장을 골라 철수 강요¹⁵⁾
 - 롯데마트는 2007년 4개 매장, 2008년 4개 매장, 2009년 19개 매장, 2010년 10개 매장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사전 이유 설명이나 협의의 전거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철수 시기만을 통보
 - 롯데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을 직업 담당하여 채용공고, 면접, 업무지시 등 일체의 인사관리를 직접 하면서 단지 임금 등 비용만을 미폐에 부담시킴
 - 매해 명절 때마다 롯데마트 판매 선물세트의 구입을 강요.
 - 2006년에는 롯데마트가 다른 업체에서 직매입한 중국산 대나무 발에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미폐에 불량 재고품 구입을 강요

14)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유통업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며,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유통업체 책임·관리 하에 판매하는 형태

15) 2007년 철수 당한 목포점과 서울역점은 월 평균매출이 다른 매장들보다 높았음에도 매출부진을 이유로 강제 철수

- 롯데마트는 상품권 행사 및 할인 행사를 매달 진행하면서 미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고, 미폐 상품에 대해서도 30~50%의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강요
-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시설물 사용료, 신상품 촉진비,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 요구. 특히 신상품 촉진비는 미폐가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임의로 청구
-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실제 소비자로부터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반품 처리를 요구하고, 롯데마트가 설정한 판매목표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납품이 없는 경우에도 전산상 매입 처리하여 물류비 등의 이익을 취함

2. 공정위 신고와 결과

- 2011년 7월
- 미폐, 롯데쇼핑에 대해 불이익제공금지 위반,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구입 강제 등으로 공정위에 1차 신고
 - 신고 이후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관계자 소환 조사, 대질 조사, 피신고인에 대한 현장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음
- 2012년 3월
- 공정위, 롯데마트 신고건에 “피신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통지
- 2012년 3월
- 미폐, 공정위에 2차 신고

3. 공정위 처분의 문제점

1) 다수의 증거 외면한 무혐의 처분

- 미폐가 1차 공정위 신고시 제출한 증거서류 목록을 보면, 각종 계약서는 기본이고, 롯데마트의 매장 철수요청 이메일, 판촉사원 지원 내역, 물품과 상품권 구매 강요와 관련된 자료들, 할인행사시 비용전가 자료, 신상품 촉진비 강요, 판매장려금 부과 자료들, 전산조작 강요와 실행 자료들 등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자료들을 제출

-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서의 구체적 법 위반 사항별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뭉뚱그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무혐의 심의 종결 처리

2) 미폐 신고건 무혐의 처분은 공정위 입장과도 배치

- 공정위는 2013년 1월 10일 발표한 ‘2012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행위 유형 1, 2, 3위로 각각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부당 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를 발표함
- 공정위 스스로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부당 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를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폐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롯데마트의 의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상당한 증빙 서류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변변한 신고인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

[사례 3: 국순당 피해]

- 4년 걸려 과징금 1억 원 신고 대리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확정

1. 배경 설명

- 2008년 10월 • 국순당은 일부 대리점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전국 74개 대리점 중에서 23개 대리점 퇴출을 위한 ‘H-프로젝트’를 가동
- 2009년 3월 • 24개 퇴출대상 대리점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순당에 대리점 퇴출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대리점의 반발에 대해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 주요 물품 공급 축소와 중단으로 대응
- 2009년 말 • 국순당, 23개 대리점에 대해 그동안 자동적으로 갱신해오던 계약 갱신을 거부

2. 공정위 신고와 결과

- 2009년 9월 • 대리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국순당이 대리점에 대해 주요 물품 공급을 재개해 달라는 조정 신청
- 2009년 11월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일정 조건의 물품공급 재개 조정 권고

- 대리점은 권고안 수용했으나 국순당은 거부하여 사건은 자동으로 공정위 이첩
- 2010년 1분기 • 공정위 담당 조사관 “대부분 조사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조사관이 2번이나 교체되면서 의결은 지연됨
- 2013년 2월 • 공정위, 국순당에 대해 불이익제공금지 위반, 판매목표 강제, 구속조 건부거래 금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 부과 의결

3. 공정위 처분의 문제점

1) 공정위 처분까지 4년 소요로 피해 대리점은 회복 불능 상태

- 신고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1분기에 이미 국순당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H-프로젝트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였고, 조사관 역시 2010년 1분기에 신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미 주요 자료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의결하겠다”고 확인
- 그러나 의결까지 2번의 조사관 교체가 있었고, 그 때마다 의결은 결과적으로 1년 정도 지연됨.
- 만약 공정위 의결이 2010년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피해 대리점들은 국순당 대리점 지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4년 기간 동안 상당수 대리점이 파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¹⁶⁾

2) 제재 효과 없는 과징금 규모

- 공정위는 “백세주 공급 축소 및 중단으로 신고 대리점들이 입게 된 매출액 피해,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중단·축소된 물량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해당 대리점들의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중단·축소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과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경우 위법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원에서 3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 위법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으면서도 국순당이 이 사건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16) 주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실적, 신용 상태 등의 엄격한 조건이 따르는 국세청의 면허가 필요하나 2013년 현재 당시 협의회를 구성했던 상당수 대리점주들이 세금 미납부,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주류 면허 회복이 불가능

- 중단·축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 대리점이 국순당의 물량 축소·중단 이전의 매출액으로 충분히 산정 가능하고,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이전 신고 대리점의 매출액으로 관련 매출액을 충분히 산정 가능함에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분류
- 1억 원의 과징금은 2011년 매출액 1,240억 원 규모의 국순당에게 결코 제재 효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액수, 남양유업 대리점 사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와 비교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징금 수준

[사례 4: 남양유업 피해]

- 2006년 불공정신고 처리 당시 전면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감독 했다면...

1. 배경 설명

- 2005-06년
- 남양유업 가양대리점과 홍제대리점, 남양유업이 물량주문시스템(PAMS21)에서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 하해 왔다고 공정위에 신고
- 2006년 12월
- 공정위, 가양 대리점에 대한 신고건은 배제하고 홍제대리점 신고건에 대해서만 거래상지위남용(구입 강제) 행위로 시정명령
 - 이후 가양대리점과 홍제대리점은 공정위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남양유업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하여 승소
 -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대다수 대리점에 대해 전산조작을 통한 구입 강요, 대리점에 대한 떡값, 전별금 등의 갈취 행위,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등의 행위를 지속
- 2013년 5월
-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협박·폭언이 공개되면서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발전

2. 공정위(검찰) 신고 및 처리 결과

- 2005-06년 • 남양유업 가양·홍제대리점, 남양유업을 구입강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 2006년 12월 • 공정위, 홍제대리점 신고건에 대해 ‘구입강제’ 시정명령 의결
- 2013년 1월 • 남양유업 대리점들, 남양유업의 전산조작을 통한 구입 강제, 임금 전가, 떡값·전별금 등 갈취에 대해 공정위 신고
 - 피해 대리점은 공정위 신고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¹⁷⁾를 제출하였으나 공정위 조사관은 계속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남양유업의 공장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등 간단한 자료까지 계속 제출 요구
- 2013년 4월 • 피해 대리점, 남양유업의 전산조작 등에 대한 검찰 고소
- 2013년 5월 • 검찰, 남양유업에 대한 압수수색
- 2013년 7월 • 공정위, 남양유업에 대해 구입 강제와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임금 전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 부과 의결, 검찰 고발 방침 밝힘

3. 공정위 처분의 문제점

- 1) 2005-2006년 신고에 대한 부실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 사후관리 부재
 - 2개 대리점의 공정위 신고 내용상 남양유업의 구입 강제 행위가 전체 대리점에 대한 것일 개연성이 충분히 높았음에도 공정위는 홍제 대리점 1개 신고인의 신고에 해서만 조사하여 처분
 - ‘구입 강제’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 이후, 남양유업이 같은 행위를 현직 대리점에 계속하고 있는지 감시하였거나 하나 공정위는 이후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부실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 처분 이후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발생

17) 관계자 증언 녹취록, 전산조작 내역, 대리점의 남양유업 직원에 대한 은행 송금 내역 등

2) 검찰 조사 여부와 여론에 따른 차별적 처분

- 공정위가 신고 6개월 만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123억 원이라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불공정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전무
- 이는 검찰이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남양유업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높은 수위의 제재 의결이 이뤄진 것
- 검찰 조사가 없고 여론화가 안 된 수많은 불공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처분까지 3년~4년이 걸리는 것이 다반사이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남양유업 사례는 오히려 공정위가 불공정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

[사례 5: 농심 피해]

- 신고 1년 지나 신고인 조사 착수 신고인 입증책임 어디까지?

1. 공정위 신고 및 처리 결과

- 2012년 7월 • 참여연대·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농심에 대해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거래조건 차별, 거래 거절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 2013년 1월 • 공정위, 신고인에게 농심에서 내놓은 ‘농심의 입장’이라는 문서 보내 농심의 주장 설명
- 2013년 4월 • 공정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농심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위법성 판단의 어려움”이라고 명시
- 2013년 7월 • 신고 약 1년 만에 신고인 불러서 본격 조사
 - 피신고인에 대한 현장조사, 관계인 소환 조사 등 진행하지 않았으며, 신고인에 대해서도 농심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려주지 않음
 - 한편, 농심은 2013년 7월부터 특판점에 대한 ‘판매목표 설정’ 자체를 없애 버림

2. 공정위 처리 과정의 문제점

1) 지연 조사 및 편파 조사

- 공정위 신고 약 1년 만에 신고인 불러 본격 조사 착수
- 피신고인(농심)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고인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음
- 농심과 신고인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신고건에 대한 농심의 해명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여 마치 농심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함

2) 상당한 증빙 자료 제출에도 '위법성 판단 어려움' 되풀이

- 신고인은 공정위 신고 당시 상당한 관련 증빙자료¹⁸⁾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에 대한 서면답변서에는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과연 신고인이 어느 정도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

[사례 6: 기타]

- 화인코리아: 피신고인이 자진 실토했던 증거자료도 외면
- CJ대한통운 화물운송: 근거 없이 신고인에게 불리한 법 적용 결정
- CJ제일제당 대리점: 신고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 요구

1. 화인코리아의 사조그룹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 화인코리아는 오리·삼계탕 축산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조류독감 유행 당시 부도를 맞아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스스로 판산 신청
- 이후 영업조건 호전으로 회생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화인코리아 사업을 인수할 의도로 화인코리아 채권을 대거 사들인 사조그룹이 조직적으로 회생 인가에 반대하여 현재 법원의 매각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

18) 농심의 일방적 판매목표 부과를 입증하는 농심 내부전산망 자료, 매출목표 미달성시 농심의 불이익 부과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특판점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품을 판매한 자료, 농심이 특판점의 판매 품목과는 무관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자료, 농심이 SSM과의 거래조건을 차별한 자료,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자료 등

-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이 임원으로 있는 애드윈플러스라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약 185억 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 애드윈플러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자금대여가 불가능한 신용 등급 상태에 있었음. 이러한 자금 대여 및 이자 조건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 그러나 공정위는 “애드윈플러스가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인의 2차 신고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

- 그러나 사조그룹은 그 동안 수차례 언론을 통해 화인코리아가 속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화인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이를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함

- 대법원 판례 역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음

- 결국 공정위는 사조그룹 스스로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증거 자료와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처분을 내림

2. CJ대한통운 화물운송 수탁인의 위탁인(CJ대한통운)에 대한 불공정 신고건

-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화물운송 수탁인과 함께 2013년 4월 CJ대한통운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행위, 구매 강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

- 신고인은 공정위 신고서와 이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법 대신 수탁인에게 유리한 하도급법 적용을 주장함. 신고 직후 공정위 서울지사 조사관 역시 “관계의 실질이 하도급관계이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하도급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건을 광주지사로 이송

- 공정위는 ‘화물운송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주선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화물운송 위탁인이 공정거래법보다 더 유리한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 공정위의 이 같은 내부 지침은 계약의 실질이 화물운송 위수탁관계가 하도급관계임이 분명한 점, 하도급법에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의 수급사업자 범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에 비춰 심히 부당. 공정위 지침대로라면 대부분의 화물운송 위탁인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 받고 노동법상의 규율도 못 받아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로 방치됨

3,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¹⁹⁾

- 참여연대와 10개 대리점은 2013년 6월 CJ제일제당을 판매목표 강제, 거래조건 차별 등으로 공정위 신고

- 공정위는 신고 이후 신고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의 보강을 전화로 요청
- 신고인은 CJ제일제당의 판매목표 강제와 관련,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순위로 매긴 CJ제일제당의 내부 문건과 대리점 매출 실적에 따라 CJ제일제당이 물품 공급가격을 차별한 내부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목표 강제’를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CJ제일제당의 공급가격 차별이 대리점간 매출실적에 따른 차별임을 입증하는 추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함
- 공정위가 신고인에 요구하는 증빙 자료의 정도는 사실상 신고인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

19) 2013년 8월초 현재, 신고 대리점들과 CJ제일제당의 협상 타결, 상생협의회를 통한 상생협약식 개최 등으로 신고인들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함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김승완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현재 글로벌 경제가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 또한 장기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였고 동시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회와 위기의 롤러코스터에 직면하여 글로벌 대기업에서부터 동네 자영업자까지 당면한 불확실성에 대한 진단 및 효율적인 처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폭 넓게 자리잡고 있는 사업형태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국가 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며 하나의 산업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성장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국가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두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올바른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밀착하여 지도, 교육, 계몽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단체로서 저희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협회를 대표하여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신고포상제의 필요성

○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포함)를 돕는 방법은 분쟁의 예방적 차원에서 처음 창업 때 자신의 형편에 맞고 성실히 영업을 하였을 때 노력에 맞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일과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평온하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및 사후적 차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자(이하 ‘가맹본부’라 함)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정보공개서 사전 교부 의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사전 교부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의무,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점포환경개선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금지를 규정하여 부당한 상황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한 소송 이전에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가맹점사업자들은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서 일정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위반은 계속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회피해 보려는 가맹본부의 이기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가맹본부가 판단하게 하는 법의 적용 현실일 것입니다.

○ 지금 현재 가맹사업(정보공개서)의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는 약 4천 800여 개 정도입니다. 그 중 대기업 브랜드를 제외했을 때 약 90% 이상은 중소 가맹본

부 브랜드들입니다.

대기업 브랜드 이던지 중소브랜드 이던지 각자 나름의 범위만 행태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과연 가맹점사업자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브랜드는 대기업 브랜드일까요 중소브랜드일까요?

그리고 과연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약 4천 800여개 정도의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 전부일까요? 누구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조사할 방법도 특별히 없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시장에서 활동하는 관련자들의 말에 의할 때 등록된 브랜드 이상의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대기업이 아님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맹점사업자를 돕자고 다양한 애로들을 현장에서 듣고 법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런 규제가 늘어날수록 가맹본부는 특히, 중소가맹본부들은 더 대담한 법위반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예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기업인 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고 얼마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정직한 사업 운영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초적인 정보조차 등록하지 않으려 하는 가맹본부가 하물며 예치제도,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준수할 수도 준수하지도 않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담당자가 일일이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만 그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언론계, 산업계, 전문가 집단 등 관계자 다수의 감시를 통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문제 업체들을 신속히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맹사업법을 만든 이상 동법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즉 정보공개서의 등록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가맹본부들은 가맹금 예치제도에 따른 자금 회전의 불리함, 법에 따른 계약 절차상의 번거로움,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는데, 규정만 만들고 단속이 없다면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법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는 범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지만 아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법 규정을 회피하여 제재를 벗어나기 쉽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맹점주들에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는 공정위의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가맹사업을 수행함에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불합리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점주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은 본부가 이미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인지 및 처벌하는 때에는 점주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입니다.

○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특히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하고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마련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적법한 가맹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신고포상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7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제도를 가맹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31조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1항 5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 및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사적으로 이

루어지는 계약관계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실무자가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실태나 영업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 사항(분쟁조정절차에 가맹점주와 동석하여 의견진술)

○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범위만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 도중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제대로 이의제기조차 못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가맹분쟁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는 아님으로 가맹점주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가맹점주와 동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실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쟁해결 절차인 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의 효력)나 저작권 분쟁조정절차 등에도 모두 당사자와 같이 제3자가 참석하여 본인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보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도 적절한 중재 내지 조정을 이뤄내어 분쟁의 양 당사자의 승복과 일회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정작 가맹점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주를 위해 분쟁 조정절차에 의견진술 및 참여조차 못하도록 조정원의 조정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갖추지 않은 일반인조차도 본인을 위하여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가맹거래사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분쟁조정에 임하는 가맹본부는 관련 법령과 실무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분쟁조정에 대응하고 있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가맹점주는 분쟁 조정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타 법령(예: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칠 때 대리행위인 것이고, 본인과 같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분쟁 상황에 대해 본인을 위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법령을 모르는 가맹점주의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정절차 및 분쟁의 핵심 쟁점 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모로 열악한 입장의 가맹점주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법령의 실무적 운영만 바로 잡으면 법령의 개정 없이도 간단히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인지와 실천의지가 부족합니다.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취지, 분쟁조정 신뢰달성을 위하여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로인한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부담되는 현실에서 부득이 해당 사안을 가맹사업법 상 명시적인 문구로 추가하여 가맹점주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토론 5

공정위 토론문

박기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별지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5. 11. 11

발행처 및 Copyright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
맹
사
업
법
·
공
정
거
래
법
무
엇
이
문
제
인
가
?